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1조 제7항, 제21조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근거 신설(시행령 제34조 신설)
-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6. 12.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과태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 21조제1항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 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경우	법 제 21조 제1항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 락 처	(044) 203 - 4344